

#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0년12월 29일  
조례심사특별위원회

## 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출일자및제출자 : 2000. 12 . 26 평창군수(환경복지과장)
- 나. 회부일자 : 2000.12. 26
- 다. 상정일자 : 제8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제2차조례특위(2000.12.29)  
상정·의결 ‘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환경복지과장 신만희)

### 가. 제 안 이 유

- 의무규정등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자 함.

### 나. 주 요 골 자

- 군수가 묘지사용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는 공공시설의 설치및 지역개발사업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(안제4조제1항 제4호)
- 묘지사용 승계를 받고자 하는 승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여 한다“를 폐지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: 박태영)

- 본 조례는 중앙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개정되는 것임
- 사용허가 취소시 “공익상”필요시를 “공공시설의설치및 지역개발 사업등“으로 세분화시킴과 동시 일부 제출서류를 폐지하는 것임.
- 기타 법령형식·자구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 음

5. 토 론 요 지 : 없 음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8. 기타필요한 사항 : 없 음

붙 임 :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부

## 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평창군공설묘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제4호중 “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” 를 “군수가 공공시설의 설치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” 로 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